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분담하여**
상생하는 따뜻한 연대,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CONTENTS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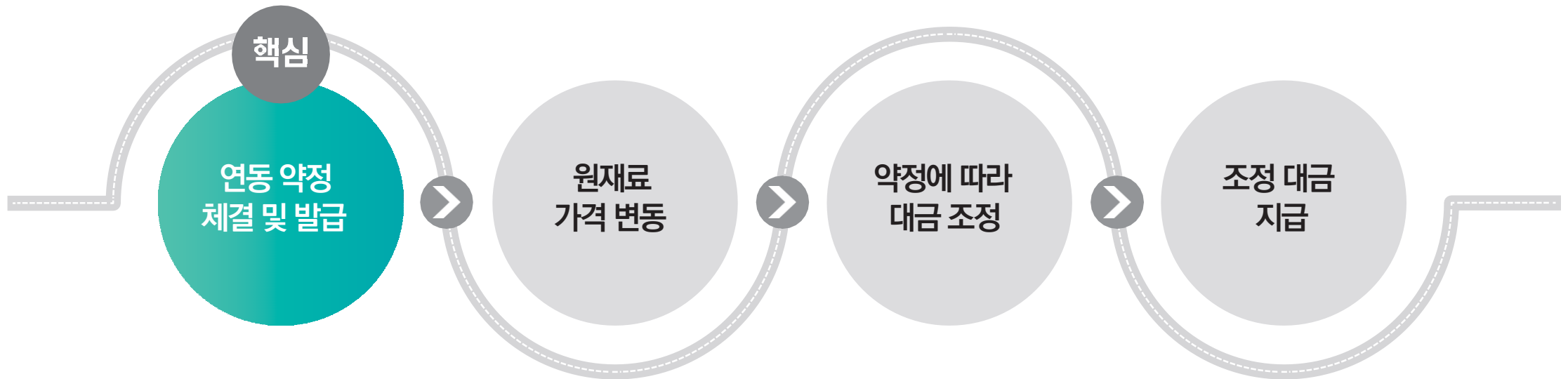
1	납품대금 연동제란	 01
2	추진 경과	 02
3	시행시기 및 적용례	 03
4	적용대상 거래	 04
5	연동 약정 체결 의무의 예외	 06
6	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09
7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주요 내용	 10
8	법 위반 시 제재	 29
9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을 위한 지원	 34
10	Q&A	 36

1

납품대금 연동제란?



-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 · 공사 · 가공 · 수리 등을 위탁할 때
②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등)을
③ 약정서에 ④ 기재하여 ⑤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⑥ 조정하여 ⑦ 지급하는 제도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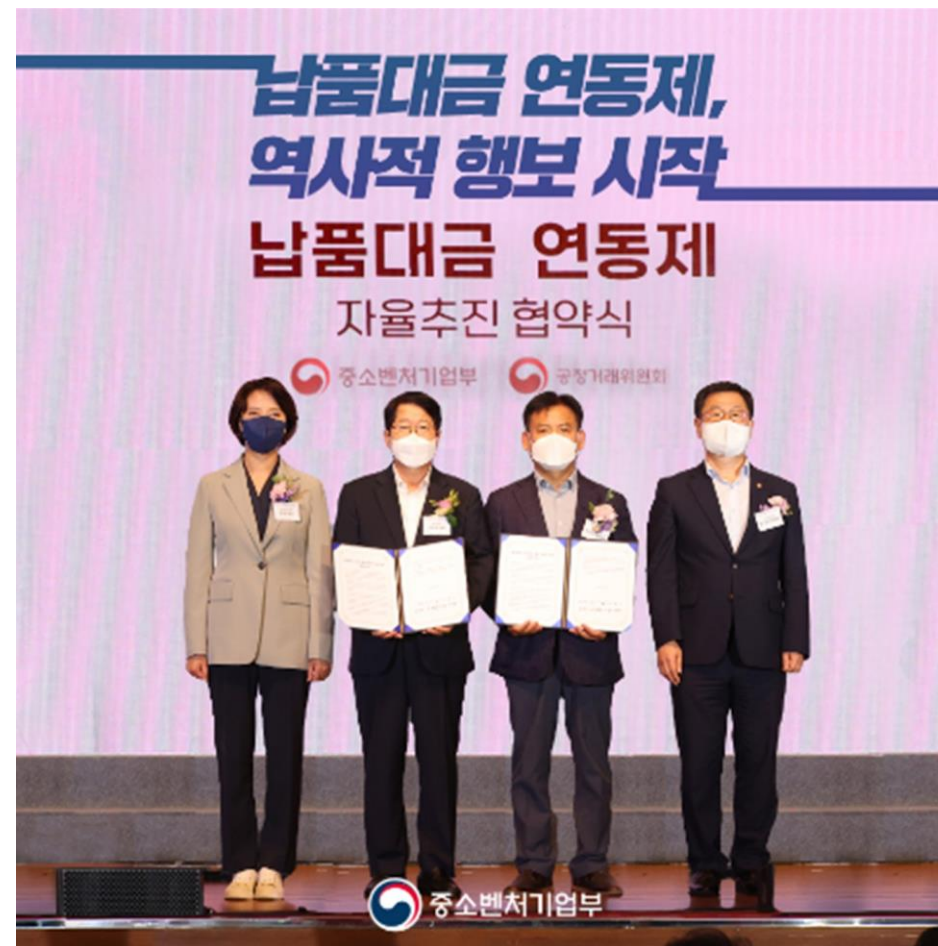


> 시범운영('22.9. ~)

- '22년 9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 '23년 1월까지 총 392개사 참여
(위탁 47개사, 수탁 345개사)
- 384건의 연동 약정 체결

> 국회 본회의 통과('22. 12. 8.)

> 법률 공포('23. 1. 3.)



3

시행 시기 및 적용례



➤ '23년 10월 4일 시행

➤ 시행일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수탁·위탁거래 약정부터 적용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 수탁·위탁거래란?

- 위탁기업**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한 기업
- 물품등**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
- 제조등**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 위탁** 물품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여 제조등을 위탁하는 것
※ 단순 구매 및 판매위탁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수탁기업** 위탁 내용에 따라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거래하는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포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위탁기업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등)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 납품하는 행위

수탁기업 (중소기업)



➤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 납품대금이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등 및 납품에 대한 대가로 수탁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함

※ 1회 발주 금액이 아닌 1건의 계약당 총 납품대금이 기준

Q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는 무엇인지?

A

물품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재료로서 원료와 재료를 포괄하고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Q

노무비와 경비도 주요 원재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A

노무비와 경비는 제외됨



➤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업종별 기준 이하인 기업

(ex) 1차 금속 제조업(C24)은 3년 평균매출액 등이 120억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

➤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1회 발주당 납품기간이나 계약 경과기간이 아닌 1건의 계약당 거래기간

- 구체적 기간은 추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확정(~'23년 10월)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1회 발주당 납품금액이 아닌 1건의 계약당 거래금액

- 구체적 금액은 추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확정(~'23년 10월)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다만,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Q

위탁기업이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해야
거래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이 경우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탈법행위를 한 위탁기업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개선요구, 시정조치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 수탁기업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개정) 상생협력법
제21조제4항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연동에 필수적인 사항을 계약의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약정서에 기재

-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대통령령 위임 사항은 추후 개정을 통해 확정(~'23년 10월)

➤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또는 갱신 시 기존 계약에 특별약정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 어느 계약에나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특별약정서 형태로 마련
- 연동에 관한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전반적으로 기재한 본문과 연동에 관한 세부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첨부로 구성
- 가이드북에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작성 예시를 제공





> 본문

구 분	주 요 내 용
제1조 (목적)	특별약정의 목적을 규정
제2조 (정의)	주요 용어를 정의
제3조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기준지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4조(납품대금 연동표의 작성)	납품대금 연동표의 작성과 관련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5조 (납품대금 연동 절차)	납품대금 연동의 절차를 규정
제6조 (효력)	특별약정의 효력을 규정
제7조 (서류의 비치)	특별약정 및 첨부 서류를 비치할 것을 규정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위탁거래약정 : (명칭)

(체결 일자)

제1조(목적) 이 특별약정은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납품단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하는 것(이하 '납품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별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연동 대상 원재료'란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원재료 기준가격'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
5. '조정요건'이란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에서 합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을 말한다.
6.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하며, '조정일'이란 그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납품대금 연동 산식'이란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한다.

② 이 특별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이하 한다)에 따른다.

제3조(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약정의 당사자가 수탁·위탁거래의 성격, 연동 대상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정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판매한 가격
2.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3. 그 밖에 약정의 당사자 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제4조(「납품대금 연동표」의 작성)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첨부1】 「납품대금 연동표」(이하 「납품대금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이 특별약정의 당사자는 「납품대금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납품대금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서류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 등을 위해 협조한다.

제5조(납품대금 연동 절차)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③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2항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첨부2】 「납품대금 연동표」(이하 「납품대금 연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 연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연동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⑥ 조정대금 반영일 이전에 수탁·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기업에 책임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일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 ① 이 특별약정은 수탁·위탁거래약정 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특별약정에 저촉되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은 이 특별약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 특별약정은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및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④ 「납품대금 연동표」는 이 특별약정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특별약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조(서류의 비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특별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납품대금 연동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특별약정의 체결사실 및 특별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인)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인)



> 첨부

구 분	주 요 내 용
[첨부 1] 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연동의 세부 사항을 합의하여 기재하는 표 * 물품등의 명칭,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기준시점·비교시점, 조정요건, 조정주기, 조정일, 조정대금 반영일,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
[첨부 2] 납품단가 변동표	납품단가가 조정된 경우 조정된 납품단가를 기재하고 상호 확인



【첨부 1】

납품대금 연동표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물품등의 명칭	
2. 연동 대상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10. 기타 사항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첨부 2】

납품단가 변동표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 납품대금 연동표의 작성

-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하여 **【첨부1】「납품대금 연동표」에 기재**하고 수탁기업에 **발급**

(예시)

【첨부 1】

납품대금 연동표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물품등의 명칭	동 케이블(CC-002)
2. 연동 대상 원재료	동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 분기(평균)
5. 조정요건	3% 이상 또는 -3% 이하
6. 조정주기	분기
7. 조정일	매 분기 첫 달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매 분기 첫 달 1일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직전 납품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 반영비율(100%) × 동 중량(1ton)
10. 기타 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연동 절차

- 수·위탁기업은 조정일마다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 조정요건 충족 시,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
-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
- 조정된 납품단가를 【첨부2】「납품단가 변동표」에 기재하여 상호 확인



▶ 특별약정서의 효력

- 특별약정은 수탁·위탁거래 약정기간 동안 유효하며,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특별 약정의 효력은 다른 약정보다 우선함
- 이 특별약정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상생협력법 제22조의2)
- 이 특별약정은 납품대금 증액 의무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4호)





> 물품등의 명칭

※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법정 기재사항)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등)의 명칭

구분	기재사항(예시)
1. 물품등의 명칭	동 케이블



> 연동 대상 원재료

※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법정 기재사항)

● 주요 원재료를 포함하여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하여 정한 원재료

* **(주요 원재료)**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 **(원재료의 범위)** 천연재료(금, 철, 동 등), 화합물(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 등), 가공물(금속강, 금속판, 골재 등), 중간재(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등) 등을 포함

구분	기재사항(예시)
2. 연동 대상 원재료	동(銅)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법정 기재사항)

- ‘기준지표’란 원재료 **기준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
 -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LME, 한국은행 지표 등)가 원칙
- ‘**기준가격**’이란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

구 분	기재사항(예시)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법정 기재사항)

(기준지표 예시)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한국은행(www.bok.or.kr),
e-나라지표(www.index.go.kr), 조달청(www.pps.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

(기준가격 예시)

가격 기준지표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인 경우,
'23년 1월 기준가격은 LME 고시가의 '23년 1월 동 가격인 10,000원/kg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Q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고시하는 지표를
찾을 수 없거나 이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①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
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
기업에게 판매한 가격

②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
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
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
는 가격

③ 그 밖에 약정서, 원가
내역서, 견적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양 당사
자가 협의 하여 정한 가격



>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구 분	기재사항(예시)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 (평균가격) - 비교시점: 이번 조정일의 전월 (평균가격)

(예시) '23년 1월 1일 약정 체결 후 2월 1일(조정일)이 도래한 경우, 이전에 대금 변경이 없었으므로
기준시점은 약정 체결일(1월 1일)의 전월인 '22년 12월(평균가격),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2월 1일)의 전월인 '23년 1월(평균가격)이 됨



> 납품대금 조정요건

※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법정 기재사항)

-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
- 변동률의 범위는 0 ~ $\pm 10\%$ 의 범위에서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함

구 분	기재사항(예시)
5. 납품대금 조정요건	$\pm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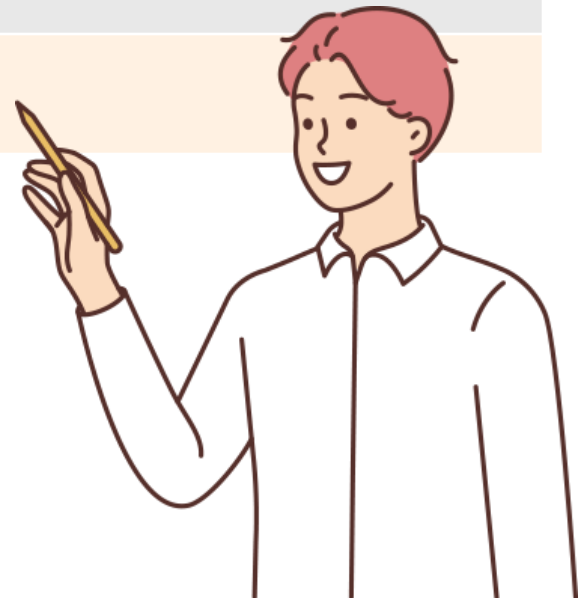
(예시)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1% → 조정요건 미충족으로 납품대금 연동 미시행,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5% → 조정요건 충족(3% 이상)으로 납품대금 연동 시행



> 납품대금 조정 주기 및 조정일

-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및 날짜를 기재

구 분	기재사항(예시)
6. 납품대금 조정주기	1개월
7. 납품대금 조정일	매월 1일





▶ 조정대금 반영일

-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

구 분	기재사항(예시)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 납품대금 연동 산식

※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법정 기재사항)

-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변경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가이드북을 참고)

구 분	기재사항(예시)
9. 납품대금 연동산식	변경 단가 (29,000원/EA) = 기존 단가 (25,000원/EA) + 원재료 변동가격* (2,000원/Kg) × 원재료 중량(2Kg/EA) × 반영비율 (100%) * 원재료 변동가격(2,000원/Kg)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12,000원/Kg) -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10,000원/Kg) ** 동(銅)을 제외한 원가 구성 내역의 금액은 5,000원으로 가정



> [납품단가 변동표]의 활용 방법

- 납품대금 연동에 따른 조정된 납품단가를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상호 확인취지로 서명·기명 날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예방**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25,000원

◇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10,000원/kg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2023년 2월 1일	12,000원/kg	29,000원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2023년 3월 1일	13,000원/kg	31,000원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조정된 납품단가) 산식에 따라 조정된 납품단가를 확인



➤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발급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공표 및 벌점 부과
 -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경우
- 개선요구, 시정조치, 공표 및 벌점 부과
 -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 예시

- ▶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 ▶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 ▶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등



➤ 탈법행위 금지 규정 위반

탈법행위란?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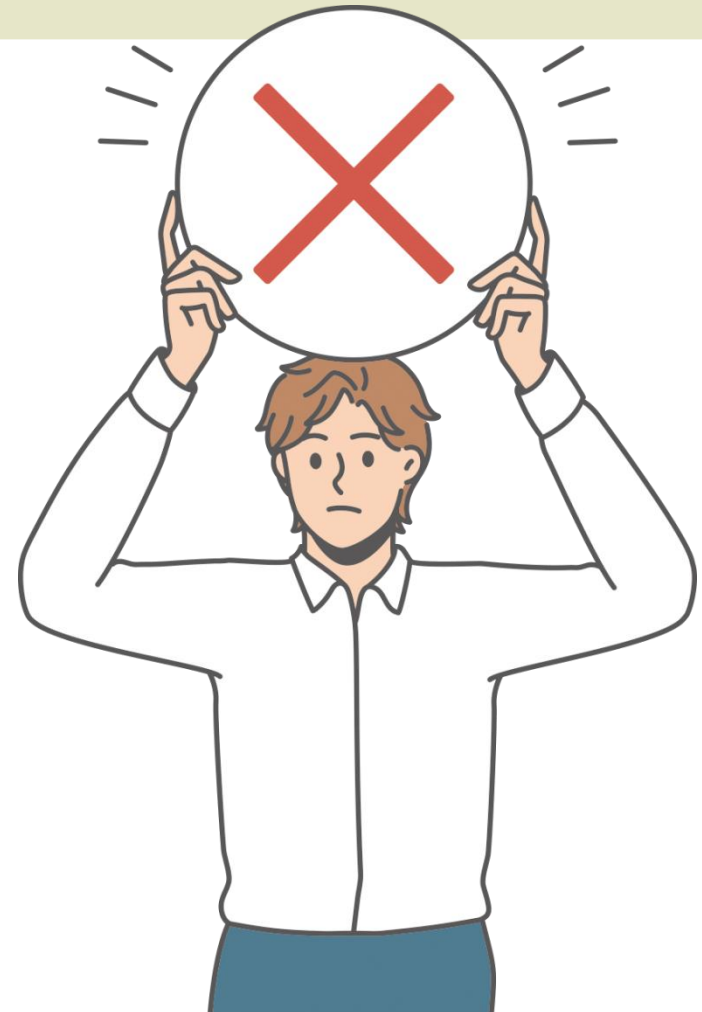
- (예시)
-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의 발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또는 금액을 쪼개는 경우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요구, 시정권고 · 명령, 공표 및 벌점 부과
 -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



➤ 위탁의 임의 취소 또는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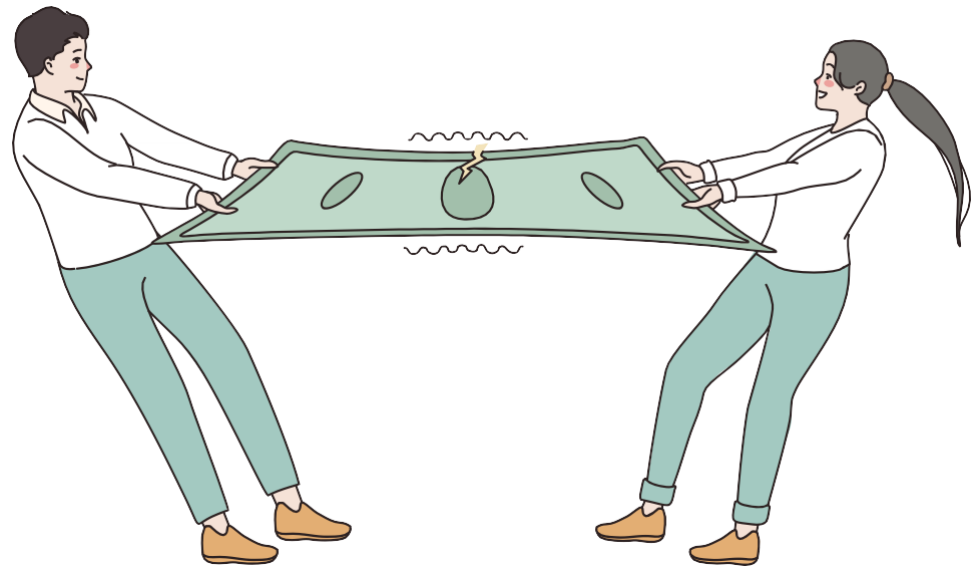
- 연동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경우
-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부과
 -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





연동 대금 미지급

- 연동 약정에 따라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개선요구, 시정권고 · 명령, 공표 및 벌점 부과
 -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
-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벌 부과 가능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9 ▶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을 위한 지원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모집공고 예정)

- (동행기업) 법 시행 이전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적으로 도입하여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기업
- 연동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

(중기부) 정부포상,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법위반 점수 감경,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대출한도 확대 등 11개
(공정위)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반영, 하도급법 벌점 경감 등 4개
(금융위) 연동제 실시 위탁기업 대상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 공급

9 ▶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을 위한 지원



➤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

- 연동제 설명, 원재료 가격정보 확인 기능 등을 탑재

➤ 컨설팅 제공

- 연동조건 협의 및 약정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컨설팅 지원단 구성
- 온라인 · 방문상담 및 교육 등 제공

➤ 연동 특별약정서 및 가이드북 배포



